

定期刊行物의 管理와 그 問題點

朴 鍾 根

目 次

- | | |
|--------------------------|----------------------|
| 1. 引言 | 7. 유네스코쿠폰의 直接配定 許用問題 |
| 2. 定期刊行物에 對한 利用者의 要求 | 8. 入札方法의 問題 |
| 3. 教科課程과 圖書館(雜誌選定과 利用指導) | 9. 外國學術雜誌의 通關問題 |
| 4. 定期刊行物室 現況 | 10. 雜誌의 缺號問題 |
| 5. 定期刊行物의 排列 | 11. 他課業務와의 關聯性과 職制問題 |
| 6. 外國學術雜誌의 逾期發注 問題 | 12. 맷음말 |

1. 引言

大學이 學問의 廣範圍하고 深奧한 知識을 教授研究하여 그것을 保存하고 解釋하고 發展시키 어 國家와 人類社會가 要求하는 指導的 人的 資源을 養成 排出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면 大學 圖書館은 이러한 目標達成을 為하여 修行되는 모든 行爲에 對하여 支援해 주고 參與하는 基本的이고도 中樞的인 教育 支援施設이라고 하겠다.

即 數拾世紀에 걸쳐 蓄積되어온 記錄된 知識과 高度化한 文明의 所產과 細分化된 學問의 急速한 發展에 立體的 同伴者로 登場되는 엄청난 情報資料를 時代의 要求性을 能動的으로 開發하여 利用者의 趣向에 맞도록 多角的 具體的으로 處理 奉仕하는 情報提供 機構라고도 하겠다.

다시 말해서 現代圖書館은 從來의 圖書館資料自體를 提供함으로써 서비스하는 消極的 서비스가 아니고, 그 資料가 품고 있는 内容을 多角的으로 處理하여 積極的으로 서비스하는 即 情

報을 提供하는 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圖書館 業務의 積極的인 서비스化와 多樣하게 開發되는 圖書館 機能은 近年에 들어서 古來의 傳統的인 圖書館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情報센터의 役割을 하는 圖書館으로 그 이미지와 機能이 變質되어가게 하고 있다.

이는 特히 專門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의 境遇에 더욱 顯著히 나타나고 있어서 外國에서는 勿論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圖書館學科라는 이름을 文獻情報學科나 情報圖書館學科等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意見이 오가고 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그 大部分이 定刊物의 爆發의인 流出에 起因하고 있음을 두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그 大學(國家)이 追求하는 教育目標에 副應되도록 教科課程과 密接히 關聯시켜야 함은 勿論 現代 情報源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定刊物로 視線을 돌려 組織되고 管理

運營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爲한 하나의 手段으로써 圖書館 司書 들의 經驗과 實務를 通한 創意的이고 合理的인 能動的 批判과 問題點에 對한 代案提示는 繼續 奬勵되고 開發되어야 하며 이에 對한 當局의 充分한 理解와 果敢한 解決力은 司書들의 士氣와 勤務意慾을 북돋우며 그 圖書館과 大學의 健全한 發展을 約速해줄 것이다.

서울大學校 綜合化에 따라 改編된 圖書館의 現體制속에서 定期刊行物室의 運營現況과 그동안에 빚어진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分析 檢討해 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効果的인 圖書館 政策樹立에 도움이 되는 資料가 되기를 期待하며 몇 가지 問題點을 指適하고 그 解決方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2. 定期刊行物에 對한 利用者의 要求

定期刊行物은 特定 主題(Subject)에 對한 整頓된 知識의 품음인 單行本과는 달리 그것이 體系 있게 整頓되어 冊으로 나오기 以前에 각각의 短編的 記事(Article)를 速報하고 또 그 內容의 最新性을 生命으로 하는 最新情報의 情報源이다.

高度한 文明의 急成長은 學問의 多邊的 專門性을 深化시키며 個個事例의 空間的 當時의 意見과 判斷을 要求한다. 또한 定刊物의 새로운 分野에 對한 最新情報의 速報性은 研究者들에게 많은 興味와 觀心을 주며 이에 對한 價值와 重要性은 날로 重要視되고 急增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情報源의 雜誌性向의 趨勢로 現代圖書館에 있어서의 定刊物의 位置와 그 機能은 昨으로 重要視되고 크로즈업되고 있다.

圖書館은 이와같은 利用者의 要求를 잘 把握하고 또 多角的으로 開發하여 그런 方向에로의 誘導 및 案내를 極大化하여 情報提供 機構로써의 보다 積極的인 奉仕機能에 充實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可及的 보다 많은 利用者(特히 學生)에게 定期刊行物의 利用機會를 賦與하고 開放해 주어야하며 雜誌利用의 열쇠라고 할수있는 各種 二次資料의 많은 備置와 그의 利用法 指導를 계울리 해서는 안된다.

3. 教科課程과 圖書館 利用指導

大學의 教科課程과 圖書館의 圖書選定이나 利用指導에 關해서는 그 相關性과 有用性에 對해서 그동안 많은 論議와 提唱이 있었다.

이에 對한 當局의 理解있는 判斷과 必要性의 認識은 많은 大學이 圖書館 利用法指導를 教科課程으로써 採擇케 함으로써 窮極的으로는 大學敎育의 効果的이고 能率的인 目標의 達成에 큰 成果를 얻고 있음을 周知의 事實이다.

學生들이 그들의 學習에 必要한 모든 圖書館 資料들이 圖書館 司書와 함께 自身의 學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는 미처 잘 모르거나 生覺해 보려 들지 않거나 過少評價해 버리는 傾向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實情인 것 같다. 外國의 境遇는 教科課程에 包含시키는 境遇도 있지만 다른 方法으로는 가끔 講義時間에 該當敎授가 圖書館 利用에 關한 特講을 圖書館 司書에게 要請하고 또 그 成果는 教授自身이 몇時間 講義하는 몇배의 効果가 있는 것으로 評價되어 이러한 方法도 흔히 採擇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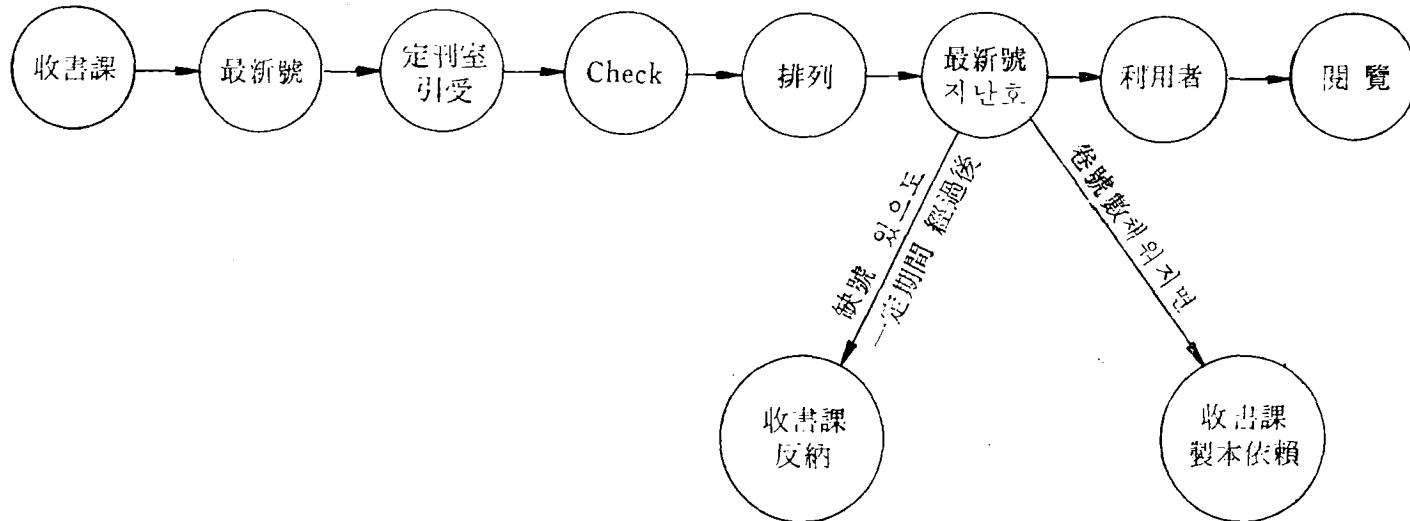
그러나 現在 서울大學校의 境遇 圖書館 利用指導라는 것은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때 기껏해야 5分間의 極히 要式的인 節次뿐이니 利用者에 對한 積極奉仕를 不斷히 開發해야 할 圖書館으로서는 당장 解決해야만 할 課題라 아니 할수 없다.

따라서 가장理想的인 것은勿論大學當局이
教科課程에 圖書館 利用指導에 關한 것을 包含
시키는 일이지만 이것이 現實的으로 極히 어려
운 일이라면 적어도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의 時
間이라도 最少 3時間 以上으로 늘리어 該當分野
의 司書들로 하여금 利用指導를 하도록 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各學科
長은 自己科의 講義時間을 적어도 年 1回以上 割
愛해서 圖書館 司書의 特講을 要請할 수 있는 아
량도 아쉬워다.

한편 圖書館則에서도 앙케이트等을 자주 調查
해서 利用者의 要求性을 把握하고 開發한다거나
各分野의 細密한 案내 팜포렛을 大量備置 또는
配付하는等 보다 能動的으로 積極的인 案내를 개
울리해서는 않될 것이다.

또한 圖書館則에서의 收書政策은 반드시 教科
課程과 깊히 關聯지어 選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生覺한다. 定期刊行物의 경우도 全大學의 分
野別 教科課程과 比較해서 적어도 基本的인 것은
最少한 갖추고 全學의 藏書構成의 均衡과 繼續
性도 考慮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生覺한다.

2) 資料의 flow chart



引受한 雜誌를 체크할 때에는 變化事項(誌名
變更, 刊種變更, 休刊, 畢刊, 復刊, 停刊等)과 正
誤表(Eratta)의 有無를 調査 處理한다. 특히 正

4. 定期刊行物室의 現況

1) 概 要

- ① 開館時間 { 平 日 : 09:00—18:00
土曜日 : 09:00—13:00 }
- ② 閱覽席 { 教授 : 35席
大學生 : 36席 } 71席
- ③ 面 積 { 閱覽室 : 125坪
書庫 : 397坪 } 522坪
- ④ 閱覽方法 { 大學生 : 一部開架式
教 授 : 完全開架式 }
- ⑤ 職員 : 3名
- ⑥ 所藏事項

75. 8. 1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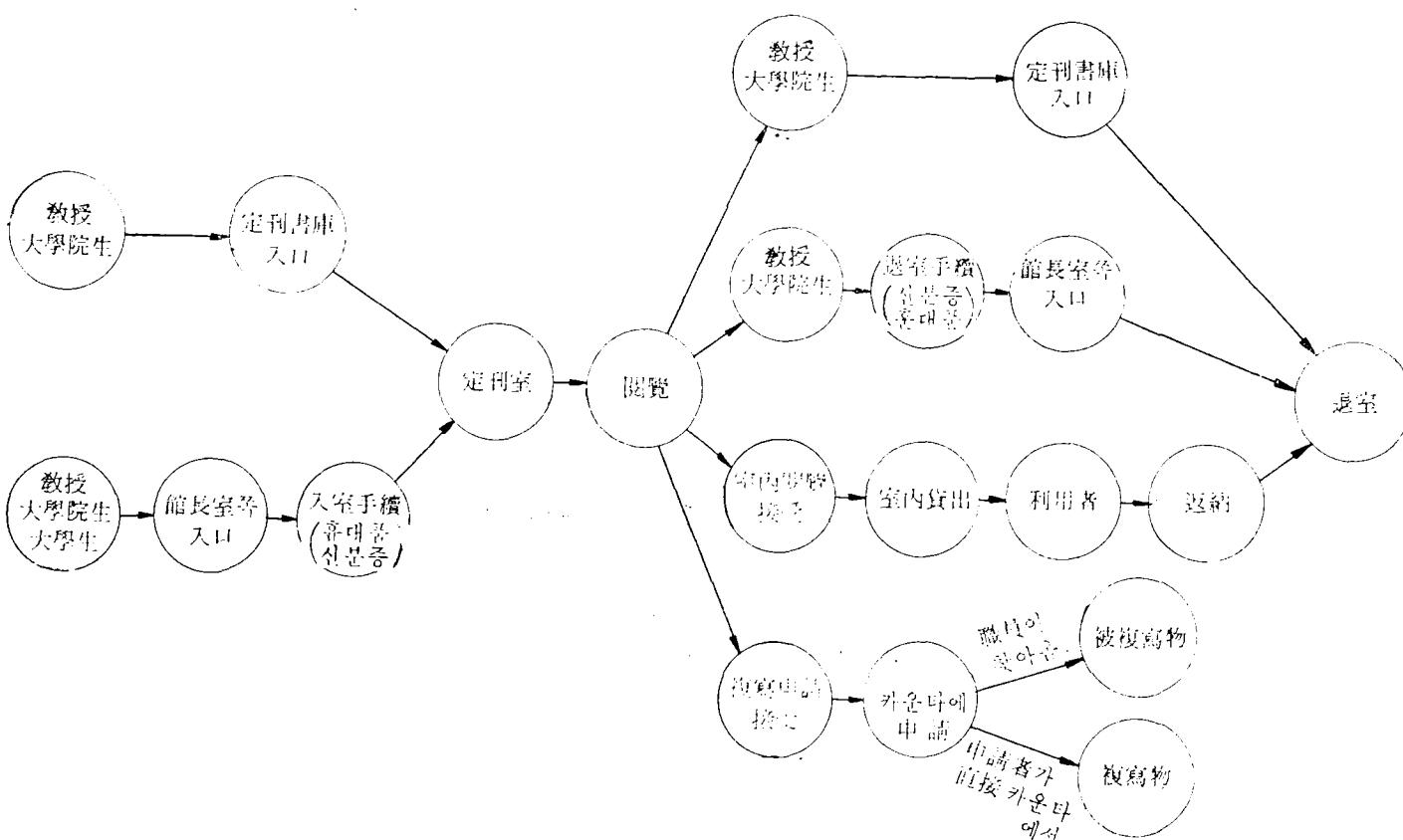
구 분	국 별	종 수	계
동 양 서	국 내	388	539
	국 외	151	
서 양 서	국 내	4	784
	국 외	780	
신 문	국 내	15	21
	국 외	6	
계	국 내	407	1344
	국 외	937	

誤表의 調査處理는 利用者들에게 誤認을 막고 不
便을 덜어 주는 重要한 씨비스라고 生覺한다.

※ 75.5.15~7.31의 正誤表 調査處理件數 : 43

3) 利用者の flow chart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出入日가 2個 있



4) 利用者 現況

75.5.15~7.31

신분별 기간	교수	대학 원생	대학생	기타	계	1일 평균 이용자
5. 15~5. 31	53	238	856	12	1159	78
6월	59	715	2436	73	3283	105
7월	61	779	2879	9	3728	125
계	173	1,732	6,171	94	8,180	103

5) 主要業務 現況

75.5.15~7.31

구분	월별	5. 15~31	6월	7월	계
인수책수		6852	2237	1602	10,691
참고질의(건수)		53	114	134	301
기타안내(건수)		110	183	209	502
복사신청(매수)		274	1372	1892	3538
실내대출(책수)		303	164	1461	1928

6) 東書洋書의 區分

實務를 하다 보면 東書・洋書의 差別이 모호

으며 學生은 一部 開架式이라서 間架되지 않은
雜誌는 室內貸出을 申請하게 된다. 또한 館外 貸
出은 一切 禁止하고 있으므로 複寫申請을 받아서
職員이 直接 카운타에 다시 申請해 주게 된다.

한 때가 가끔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區分案**을 세워 보았다.

- ① 雜誌에 쓰인 言語에 따라 區分한다.
 - ② 2가지 以上의 言語로 使用된 雜誌의 境遇는 어느 한 言語가支配的으로 많이 使用되었으면 그 言語로 區分한다.
 - ③ 2가지 言語로 對譯된 것은 그 冊이 出版된 곳에 따라 定한다.
 - ④ 2가지 以上의 言語로 사용된 雜誌로 어느 것이 더 支配的으로 많이 使用되었는지의 區分이 明確치 않을 때는 本圖書館의 利用者가 가장 많이 使用하는 言語로 區分한다.

5. 定期刊行物의 排列

1) 未今綴 雜誌

新刊未製本雜誌는 製本雜誌와 區別해서 王

先 雜誌의 特性을 살리고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原則에 立脚해야 한다.

新刊雜誌의 排列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于先 分類順과 알파벳순 그리고 收入順이 있겠고 알파벳順이라면 로마나이즈해서 東書·洋書를 混合排列할 것인가. 區分해서 排列할 것인가. 區分해 排列한다면 洋書의 境遇 모두 表紙書名의 알파벳순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그中 團體에서 나온 雜誌는 英美目錄 規則에 나온 대로 團體名의 알파벳순으로 할 것인가 또 東書中 外國雜誌의 境遇 本國의 原音을 로마나이즈할 것인가 우리나라 音으로 읽어 가나다順으로 排列할 것인가 等等의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고 각各 長短點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가지 方法中 그들의 長短點을 檢討結果 모든 雜誌를 東書·洋書로 大別해서 洋書는 알파벳順, 東書는 가나다順으로 排列하기로 했다.

그 理由는 대강 다음에 열거한 理由에서 였다.

① 모든 雜誌는 article approach이지 subject approach가 아니라는 雜誌 本來의 特성이 있다.

② 한 雜誌에 여러 主題를 다루고 있어서 分類하기가 困難하다.

③ 모든 論文에 引用된 參考文獻이 雜誌名이나 그의 article로 나와있다.

④ 利用者가 보고자 하는 雜誌名을 대개 알고 있으며 모를 경우는 司書로 하여금 分類別 目錄을 볼 수 있으므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⑤ 雜誌利用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索引誌 및 抄錄誌들이 大部分 article이나 著者名의 알파벳순으로 排列되어 있다.

⑥ 거의 모든 利用者들이 알파벳順序나 가나다順序를 잘 記憶하고 있어서 雜誌에 쉽게 直接接近할 수 있다.

⑦ 東書·洋書는 그 書名 自體가 이미 區別해 주고 있어서 보면 即時 區別이 되므로 오히려 쉽

게 接近 할 수 있다.

⑧ 日本書는 大部分 漢字가 있어서 비록 日本語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內容은 대강 理解할 수 있어 우리음으로 읽어 排列한다.

⑨ 中國書는 本國音으로 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司書 自身도 잘 모를 뿐만아니라 政府에서 도 公式으로 우리음으로 읽어 表記하고 있다.

⑩ 索引誌 招錄誌 利用의 初步的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

2) 製本雜誌

製本된 定期刊行物의 排列에 對해서는 考慮할 점이 많다고 본다. 現在 서울大學校 圖書館에서는 分類順으로 排列해 놓고 있으나 專門圖書館에서는 勿論 大部分이 알파벳順으로 排列하고 있다. 그러나 全分野를 망라한 綜合圖書館의 境遇에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많기 때문에 外國에서도 論難이 많은것 같다.

雜誌 本來의 性格上 또는 서울大學校의 境遇年間 約 5천여冊式 製本되어 나오는 定期刊行物을 整理하는데 所要되는 엄청난 豫算과 時間 그리고 人力等을 節約하고 또 現在 서울大學校의 境遇는 量的으로 보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알파벳순으로 排列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繼續的으로 放大해 가는 定刊物의 量的 增加로 管理面이나 主題別로 보고자 하는 利用者の 便宜面 또 자주 있는 雜誌의 分割 및 統合에 依한 技術的 處理等의 問題點等을 考慮할때 分類順排列 또한 무방하다고 生覺한다. 定刊物의 排列은 점차로 알파벳順으로 되어가고 있는 趨勢이기는 하나 이 問題에 對해서는 可及的 速斷을 피하고 앞으로 時間을 두고 充分히 檢討해 봐야 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

6. 外國學術雜誌의 適期發注 問題

最新性과 繼續性을 生命으로 하는 外國學術雜

誌의 購入에 있어서 1975年度의 서울大學校의 境遇는 當該年度 雜誌를 그해 5月에나 契約하게 됨으로써 行政的 節次上 所要되는 期間이나 外國으로 부터 郵送되어오는 期間 또는 送金한 쿠폰의 追審期間等 約 四個月을 考慮한다면 그해 첫 호가 빨라야 9月에나 오게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年刊이나 季刊의 境遇는 그 出版頻度를 考慮해서 조금은 팬참을지 모르나 週刊誌처럼 그 發行頻度가 잦은 境遇라면 이미 그것은 最新性을 잃고 雜誌로써의 生命을 잃게되는 結果가 된다고도 하겠다. 例를 들어 “Current Contents-life science”와 같은 內容目次를 速報 서비스하는 雜誌類는 最新情報의 出現을 보다 신속히 利用者에게 알려주기 為하여 대개 航空配達로 비싸게 注文 되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時時刻刻으로 变천되고 發展하는 科學分野의 情報 速報書를 1年餘나 늦게 받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비싸게 지불된 한낱 休紙로써의 價值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

더욱 極端의인 例를 들어 外國의 日刊新聞의 境遇라면 차라리 保管을 為한 舊聞購入이라고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늦게 發注함으로써 파생되는 雜誌價의 引上이나, 品切이나 切版으로 因한 缺號 發生問題 또 他意에 依한 購讀期間의一方의 變更, 雜誌價의 割引惠澤 機會의 喪失, 當該年度末에 決算을 할수 없는 不可避性, 利用者の 圖書館에 對한 不信風潮 等等의 許多한 問題點이 發生하게 된다.

最新雜誌만을 所藏하고 있어야할 新刊雜誌室에 1年餘 묵은 舊刊雜誌만을 展示해 놓는다는 것은 웃지못할 안타까운 일이며 또 이들에 依해 目次速報 서비스를 한다면 이는 速報가 아닌 緩報가 될 것이며 索引을 만드는 境遇도 그 節次上所要되는 期間等을勘案한다면 晚時之歎을 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文獻이 必要해서 찾아오는 利

用者에게는 더 이상 큰 失望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累積됨으로써 생기는 利用者들의 圖書館에 對한 不信風潮는 면할 길이 없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特히 自然科學 分野의 研究者들은 自己들 個人이 別途로 雜誌를 購讀하거나 所屬된 學科, 教室에서 따로 購入하게 되는 것이 漫然하게 되는 것이다.

結局 雜誌가 늦게 發注됨으로써 생기는 모든 不利益된 일은 그 原因이야 어떻든 間에 結果의 으로 損害보게 되는 것은 利用者들과 圖書館自身이 아니겠는가. 이는 發展途上에 있는, 生產的 技術導入이 切實히 要求되는 우리 나라의 境遇같으면 비록 圖書館 支援이 間接投資이긴 하지만 重點的으로 集中的으로 投資해야될 支援 部門인지라 하루속히 改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生覺한다.

雜誌가 늦게 發注되는 것은 서울大學校만의 問題가 아니다.

모든 國公立機關에 共히 適用되는 問題인 것이다.

大部分 外國書籍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實情으로써 더구나 最新性과 繼續性을 生命으로 하는 外國學術雜誌를 研究資料의 主軸으로 삼는 大學이나 研究機關에게는 雜誌가 늦게 발주되는 問題는 根本의으로 是正되어야 할 가장 큰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根本의 原因은 外國學術雜誌 購入 豫算이 “豫算會計法(1973. 2. 16法律 第 2518號 改正) 第 2條(會計年度) 第 ②項의 法的 制約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生覺된다. 上記 第 ②項에는 “國家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에 始作하여 同年 12月 31日에 終了한다”라고 明示되어 있다.

이는 國家의 豫算會計法上 基本의인 大原則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보나 私立을 포함한 全國의 總 外國圖書類 購入費(約 100萬달러로 推算

됨)만은 다른 特殊한 경우처럼 繼續事業費로써의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例外的으로 立法措置되어서 늦어도 前年度 9月末까지는 그의 購入節次가 完了되도록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實需要者인 圖書館則에서 이러한 모순점을 充分히 보다 積極적으로 上部에 建議認識시킴과 同時에 “對民關係 行政法令 整備委員會”와도 直接接觸을 가져서 이의 時急한 改善을 促求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7. 유네스코 쿠폰의 直接配定 許用問題

現在 우리나라의 모든 機關은 外國學術雜誌를 유네스코 쿠폰(以下 쿠폰)으로써 購入하게 되는데 쿠폰은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으로 부터 配定받게 된다.

配定方法은 實需要者가 直接配定을 받는 “直接配定”과 實需要者와 代行業者間의 契約에 依據받는 “間接配定”的 2가지 方法이 있다.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쿠폰 配定 特別審查委員會法”에 依하면 100달러 以下는 直接配定을 받을 수 있으나 100달러 以上은 文化公報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만 直接配定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結局 “外國刊行物 輸入配布에 關한 法律 第 3條 및 第 4條”의 規定에 따라 輸入業 許可를 받은 자만이 輸入할 수 있게 되어있다.

現在 “外國刊行物 輸入配布에 關한 法律 第 3條 및 第 4條의 規定에 依據, 文化公報部 出版課에 登錄된 輸入代行業者는 4個 會社가 있다.

이들 4個 業者間의 過多競爭은 일축하고라도間接配定의 境遇의 表面的인 得失만을 簡單히 말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서울大學校의 境遇 1년의 外國學術雜誌 購入費가 約 6萬 4千달라라면 間接配定을 받을 境遇 유네스코 쿠폰 配定 手數料 4%, 輸入代行 手數料 4%해서 配定總額의 8%를 追加로

支拂하지 않으면 안된다.

直接配定이나 間接配定을 莫論하고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에 配定手數料를 配定總額의 4%를 支拂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間接配定의 境遇 6萬 4千달리에 對한 輸入代行 手數料 4%는 2560달라로써 韓貨로는 128萬圓이 된다. 直接配定을 받을 境遇는 上記 128萬圓이 節約이 되므로 月給 4萬圓의 職員 2人을 採用하여 發注業務에만 全擔케 한다면 年間 人件費 96萬圓을 除外한 32萬圓으로 通信費等으로 充分히 充當할 수가 있다.

現在 約 1300種의 約 6萬 4千달라相當의 外國學術雜誌를 購入하고 있는 서울大學校의 境遇는 雜誌의 平均割引率 4%만勘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年間 128萬圓의 豊算을 追加로 節約 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釜山大學校 總長은 지난 1973 年度 全國 國立大學 圖書館長 會議의 建議案으로 유네스코 쿠폰의 直接配定 許用을 “사총 130—1188(73.7.14)호로 文化公報部에 建議한 바 있다.

文化公報部는 上記 公文의 回信으로 출판 1028—8626 (73.7.19)호로 回信한바 있으나 亦是前述한 法條文을 再確認하는 內容의 것이었을 뿐이었다.

유네스코 쿠폰의 直接配定을 許用함으로써 豊算上의 節感이라는 利點도 있지만 또 하나의 間接的인 큰 利點은 輸入代行業者들간의 不必要한 過多競爭을 鈍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는 直接配定의 境遇 過多競爭으로 因한 入札過程에서의 덤핑과 代行業者相互間이나 圖書館間의 相互不信을 막을 수 있는 最善의 길이라고 生覺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直接配定과 間接配定을 모두 許用해 줌으로써 需要者들은 需要者 自信들의 實情에 알맞게 配定方法을 選擇할 수 있을 것이며 間接配

定의 境遇일지라도 代行業者 相互間도 信用爲主의 거래처로 確保하고자 하려는 風土가 造成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모든 豫算은 그 項目이 決定되어 있어서前述한 바와 같이 直接配定을 받을 境遇 圖書購入費는 節約할 수 있으되 節約된 豫算 即 圖書購入費로써 人件費나 通信費 等으로 轉用하기는 또한 現實的으로 어려운 點이 적지않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는 原則的으로 國家나 圖書館의 大局的 長期的 眼目에서 利益이 될다는充分한 認識하에 그에 對한 脆弱點을 補完할 수 있는 果敢한 協助와 配慮가 切實히 要求된다.

8. 入札方法의 問題點

外國學術難誌를 購入함에 있어서 우리는 必然的으로 新聞公告를 내어서 公開競爭入札을 하게 된다.

前述한 바와같이 勿論 여기에 應札할 수 있는資格者は “外國刊行物 輸入配布에 關한 法律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에 依據 文化公報部 出版課에 登錄된 4個會社뿐이다.

入札方法에 있어서 公開競爭入札을 해야 된다는 根本 趣知는 참으로 理想의이라고 하겠으나 적어도 外國學術難誌를 購入함에 있어 公開競爭入札을 해서 最低價格 入札者을 落札者로 選定함에는 적지않은 問題點이 있다.

現在 物品管理法(1972. 12. 8法律 第 2359號로 改正) 第 2號(定義)의 ①項의 規定에 依하면 圖書類도 物品으로 取及하고 있어서 圖書를 購入 할때는 一般物品의 購買와 마찬가지로 物品購買入札留意書(1967. 2. 21改正)의 通用을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다.

同法 第 7條(落札者 選定) ②項에 依하면 “…豫定價格 以下인 最低 入札者를 落札者로 選定한

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極端的으로 假像해서 예를들어 보자면 輸入代行業者들의 過多 競爭은 必然的으로 甚한 덤핑을 유발시키고 있어서 1300種의 外國學術雜誌 購入豫定價格 6萬 4千 달라가 단돈 1달라에 落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고 假像해 볼때에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을 수 있겠다.

첫째 輸入代行業者의 外國에로의 雜誌代金 送金이 어려워지며 급기야는 未送金 品目이 있을 수도 있는 境遇가 없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이는 結局 雜誌의 未着을 結果하게 될 것이다.

勿論 契約條件에는 未納本에 對해서 賠償이나 換拂等의 責任을 賦課하고는 있지만 通期에 받아보지 못하고 오래 지난 決算當時에 賠償이나 還拂을 받아본들 利用者나 圖書館則에는 오직 不利益外에 아무것도 없으며 이로 因한 損害는 報償받을 길이 없고 缺號購入問題는 또하나의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每年 公開競爭入札을 하기 때문에 어느代行業者가 落札될 것인가를 豫則할 수 없어서 契約前의 renewal이 不可能하다. 따라서 75年度 서울大學의 境遇처럼 雜誌發注 業務가 늦게되면 購讀期間의 變更이 他意에 依해서 決定지어지게 되는 境遇가 있게되며 계속 購讀함으로써 얻어질수 있는 雜誌價格의 割引惠澤 機會를 衰失하게 된다.

셋째 renewal이라는 外國出版社로 부터의 繼續되는 便紙에는 구차스런 國內狀況 說明을 하거나 아예 回答을 안 해버림으로써 國家위신의 低落을 가져올 수 있으며,

넷째 代行業者相互間이나 圖書館間의 不信風潮로 安定된 業務修行이 困難해 지는 等等의 여러가지 좋지않은 結果를 맞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不作用을 막을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外國으로 부터의 確實한 價格表等이 침

부된다면 비록豫定價格이 50萬圓以上일찌라도公開競爭入札을 하지 않고隨意契約을 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方法이고次善策으로는 만부득公開競爭入札을 할境遇는豫算會計法施行令第101條(國庫의負擔이 되는競爭入札)①項의工事契約의例外規定처럼外國學術雜誌의落札方法도例外規定으로만들어이에準用토록하는方法이 좋겠다고生覺된다.

※ 參照：豫算會計法施行令 101條(國庫의負擔이 되는競爭入札)①項：

國庫의負擔이 되는一般競爭契約에 있어서는豫定價格以下의最低入札者을落札者로한다. 다만工事契約에 있어서는豫定價格以下로써豫定價格의 $\frac{80}{100}$ 以上의金額으로入札한者中에서그들의入札金額을平均한價格에밑으로가장가까운金額으로入札한者를落札者로한다. 이境遇豫定價格以下로써豫定價格의 $\frac{80}{100}$ 以上의金額으로入札한者가1人인때에는그入札者를落札者로한다(改正大令5928).

9. 外國學術雜誌의 通關問題

우리나라는外國에서 들어오는모든刊行物에對해서는일단關係者들의檢閱을 받는通關節次를받게된다.

例外없이大學이나研究機關에서發注되는모든外國學術雜誌의境遇도마찬가지다. 그러나外國學術雜誌輸入代行業者가輸入代行을 할境遇는그對象品目的輸入許可를일단文公部로부터받고輸人代行을하고있다.

그럼에도不拘하고다시말해서輸入許可를받은品目에對해서도郵便物이國際郵遞局에묶여配達되지않는境遇가적지않게있다. 이러한境遇는그의通關節次上다시文公部長官의輸人許可를받아오거나事由書를써야만通關이

되는等複雜하고도까다로운問題가많다. 이와같이二重으로通關節次를밟아야만하는데는그手續의複雜함은차제에치고라도거기에所要되는時間이나豫算,人力等의 낭비는어디서報償받아야될것인지그저안타까운노릇일뿐이다.間接配定을받을境遇는輸入代行業者が通關하는일이라서圖書館으로서는늦게받아보는損害만있다지만直接配定이던間接配定이던關係 없이同一品目에對해서二重으로輸入許可를받아야만通關이되는不便是마땅히排除되어야할것으로믿는다.

따라서일단輸入許可를받은外國學術雜誌目錄에對해서는그것과同一한目錄을一部複寫하여國際郵遞局에送付하고그目錄에砲含되어있는것이라면順調롭게通關配達되도록關係部處와充分히協議할必要가있다는것이筆者의所見이다.

이는純粹한學術雜誌의境遇이기때문에協助를못구할하등의條件이없다고生覺되기때문이다.

10. 雜誌의 缺號問題

雜誌의缺號는여러가지그發生要因이있겠다.

購入當時의未着으로因해서생기기도하고受贈 받을當時부터缺號狀態일수도있고管理途中分失이나甚한汚損으로생기는等여러가지要因이있겠다. 여기에서는購入하는雜誌의未着으로因해서생기는境遇만을生覺해보고자한다.

現在서울大學校의境遇는間接配定을받아代行業者를통해購入하고있으므로일단은全的으로그責任이代行業者에게있다고할수있겠다.

代行業者則의責任面에서본다면于先甚한덤

핑으로 因한 未送金의 境遇가 있을 수 있겠다. 또한 確實한 送金處의 未確認으로 생길 수도 있다. 너무늦게 送金함으로써 생길수도 있으며 꼭 支拂해야 될 金額만큼 送金하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郵便物의 잘못 配達이나 郵送中の 事故에 의해 생길 수도 있으며 國際郵遞局에 둑여 있다가 다시 還送 當해버리는 境遇도 있겠다.

또한 未着分에 對한 誠意있는 크레임을 내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筆者가 生覺하기에는 앞서 모든 境遇도 重要하지만 圖書館則이 비록 間接的이긴 하지만 根本的으로 그 責任을 免할수 없다는 生覺도 듦다.

왜냐하면 代行業者가 代行할 수 있는 最少限의 價格은 保障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다시 말해서 덤핑을 못하도록 制度的 與件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제때에 送金될 수 있도록 豫算的 行政的인 適切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며 個個 雜誌에 對한 充分한 書誌的情報를 알고 相互協助해야 하며 또한 誠心껏 代行業務를 修行할 수 있도록 諸般 督促事項과 連絡을 개을리 해서는 않된다고 生覺한다.

그외에 郵便配達上의 잘못으로 因하여 생기는 缺號는 圖書館則에서 直接配定을 받고 할境遇도 마찬가지라고 生覺한다.

参考로 日本의 慶應大學 醫學情報센타가 調査한 歐美界 雜誌의 郵便物 事故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郵送方法	所要日數	事 故 率
Air Mail	5~7日	2~3%
Air Cargo	5~7日	0
Sea Cargo	45日	0
Sea Mail	65~70日	10~15%
Surface Mail	65~70日	10~15%

雜誌의 缺號發生 原因이 어떻던 間에 雜誌의 缺號가 생기므로써 받는 損害는 참으로 적지 않

다.

첫째 實物이 없으므로 利用이 않되어 不必要했던 相互貸借 業務를 發生시키어 人力과 豫算과 時間의 낭비를 갖어 온다.

둘째 合綴製本을 할 수가 없으므로 保管上 管理上 利用上 許多한 問題點들이 派生된다.

셋째 缺號補充을 為한 豫算上의 낭비를 갖어 온다.

넷째 利用者들이 圖書館에 對한 不信風潮를 造成시키게 되어 원만한 圖書館 發展의 沮害要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雜誌輸入業務를 代行해 준다고 해서 全的으로 代行業者에게만 그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니니 먼저 잘 代行할 수 있도록 源泉的 條件을 잘 갖추어 주고 그리고 난後에는 契約의 履行條件의 強化로 誠意있는 代行業務遂行을 促求하며 徹低히 缺號督促에 개을리 해서는 않된다고 生覺한다.

11. 他課業務와의 關聯性과 職制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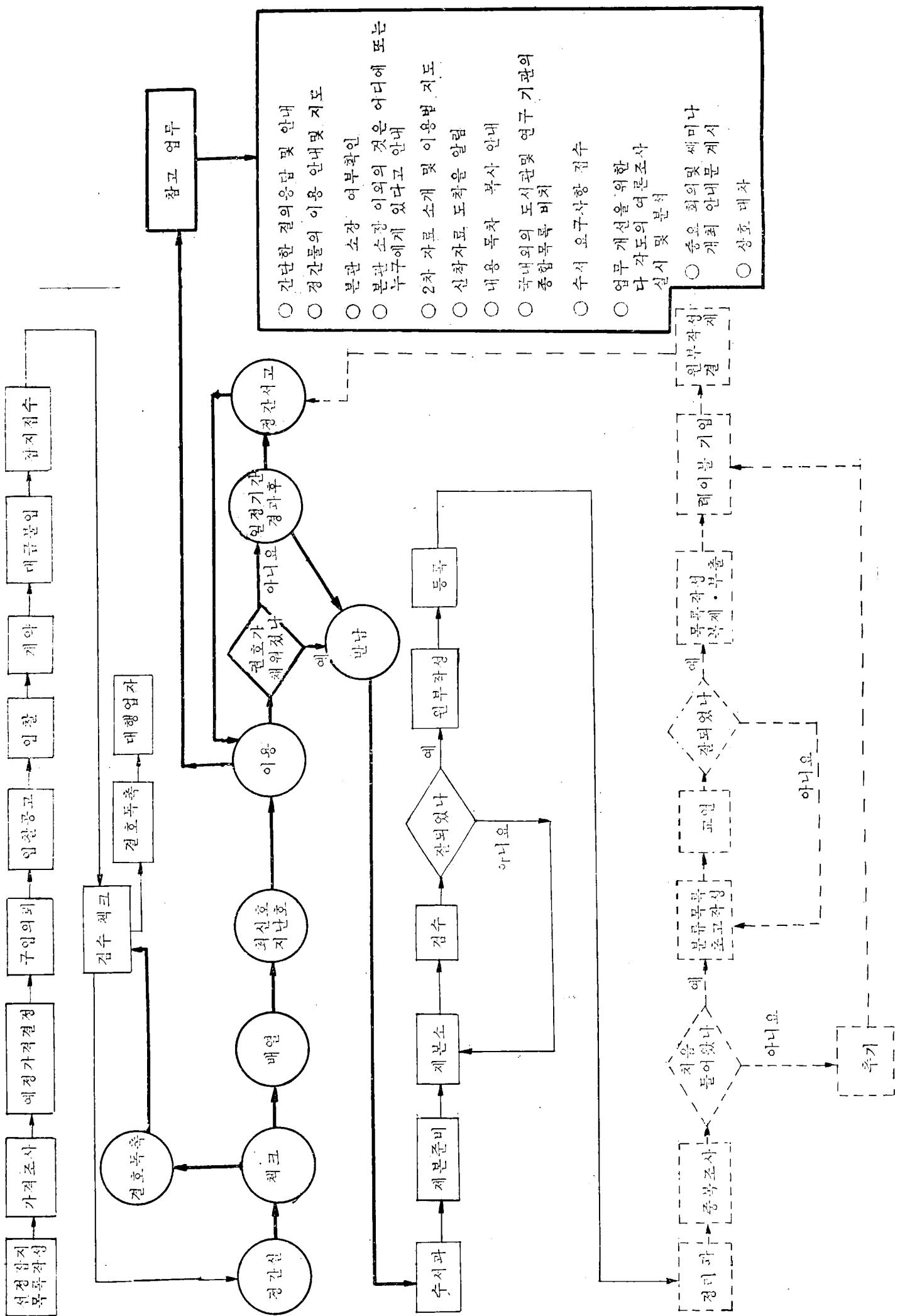
現代의 모든 學問分野에 있어서 가장 主된 情報源으로써의 定刊物의 位置와 重要性은 이미 前述한 바 있다.

定期刊行物은 한마디로 最新情報의 速報性과 繼續性이 그 主된 性格이고 技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定刊物의 特性과 機能을 最大限 活用, 發揮케하기 為해서 이를 一般 單行本과 別置 運用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서울大學校도 이의 當爲性을 認識하고 定刊室을 新設運用하고 있다.

그러나 定期刊行物室이 閱覽課 所屬으로써 運用됨으로 인한 여러가지 問題點은 定刊物을 別置運用하는 本來의 趣知에 크나큰 懷疑를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現在의 定刊室은 圖書館 組織圖表上

他課와 連結시켜 본 定期刊行物의 flow chart



의 行政的, 物理的 別途 運用이지 그 機能面에서 볼때는 理想的이 못됨은 後에 記述할 여러가지 問題點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의 ‘他課와 連結시켜 본 定期刊行物의 flow chart’에서 보는바와 같이 收書課를 비롯하여 整理課, 參考書誌課等과의 不可避한 連結性 및 重複性은 이의 機能面에서의 完全 獨立運用의 必要性을 雄辯해 주고 있다.

于先 收書課 業務를 비롯해서 他課와 關聯된 및가지 큰 問題點만을 골라 論議해 보고자 한다.

1) 雜誌의 選定

定期刊行物의 選定에는 于先 다음과 같은 6가지의 基本的인 方法이 있다고 生覺한다.

첫째 : 主題 專門家의 추천에 依한 選定

이는 現在 圖書館의 圖書選定委員會의 任務中의 하나이기도 하며 各 主題專門家(各科教授)의 추천 및 選定에 依한 選擇 方法으로써 綜合化 以前에 各 單科大學에서 取했던 方法이기도 하다.

이 方法은 各 主題의 專門家로써 그 內容을 잘 알고 또 選擇者 모두가 本校의 教授이기 때문에 本校의 教科課程과의 連關性 問題라든지 教育目標, 該當分野의 利用者의 水準 및 要求性 또는 展望等이 充分히 考慮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만일 雜誌를 收書에서 부터 製本되어 定期刊行物 書庫에 들어가 利用될 때까지의 모든 過程을 完全 獨立해서 運用된다 하더라도 圖書選定委員會에서의 選定된 目錄은 充分히 參考反映될 수 있으므로 間接奉仕하는 收書課보다는 적어도 定期刊行物의 境遇만큼은 오히려 專門家들과 直接 對하고 奉仕하고 있는 定刊室쪽이 더욱 効果的이 아닐까 生覺한다.

둘째 : 利用調查에 依한 選定

여기에는 貸出記錄에 依한 調查, 複寫申請記錄에 依한 調查, 利用文獻 頻度調查, 利用者の

要求事項等을 調査해서 利用者의 여러가지 利用形態를 調査分析함으로써 가장 客觀的이고 妥當性있는 結果에 依한 選擇方法이므로 많이 장려되어야 할 方法이라고 하겠다.

問題는 여기에 있다. 勿論 收書課에서 앞서 말한 各樣各態의 利用調查를 絶對로 못할바는 아니나 이는 엄연히 그 機能面에서 볼때에 直接奉仕하는 定期刊行物室의 業務이거나 參考書誌課의 業務이지 間接奉仕하는 收書課의 業務는 아니라그 生覺한다.

따라서 收書課에서 利用調查에 依해서 雜誌를 選定한다는 것은 無理이며 또 極히 어려운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 選定雜誌 리스트 調査

이는 一般的으로 各 圖書館에서 專門家의 意見을 參釣함이 없이 選定할 수 있는 安全한 方法이라고 하였다.

名種 參考資料나 關聯分野의 雜誌에는 그 圖書館의 性格에 따라 名 分野別로 그 圖書館의 規模에 알맞게 單行本이나 雜誌를 選定해서 수록한 資料들이 가끔 發表되고 있다. 따라서 체크하는 司書는 그저 收入記錄만 체크 할 것이 아니라 重要雜誌의 目次에서 이러한 資料들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例를 들어 醫學分野의 境遇에는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等의 雜誌에 選定된 目錄이 가끔 發表되고 있는데 그 實例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Braundon, A.

Selected of books & journals for the small medical library.

Bulletin of Med. Lib. Assn. { 58:134-158, 1970
| 59:216-285, 1971

② Stear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3 :

定刊室에서는 이와같이 選定되어 發表된 目錄을 雜誌에서 調查할 機會와 與件이 되어 있지만 收書課에서는 檢受 및 체크하기에 바쁘고 또 그 것을 調查하기 為해서 新刊雜誌를 長時間 끓어 두어서도 않되지 않겠는가.

또 二次資料에 收錄된 雜誌目錄을 參考함도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二次資料에 收錄된 雜誌들은 대개가 여러가지 形態나 方法으로 그 價值가 認定되어 이미 選擇된 雜誌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넷째 : 定刊物의 個別調査

이 方法은 名種 雜誌나 案內書를 通해서 선전되는 또는 各 出版社의 自己會社 出版目錄에 廣告되고 있는 特定雜誌(例를 들어 創刊誌等)에 對해서 또는 書評을 읽고 그 雜誌를 發行하고 있는 學會等의 社會的 地位나 質, 水準等의 여러 가지 諸般 事項에 對하여 調査하거나 他機關에서 實物을 直接보고 그 內容 等이 自己大學의 教科課程이나 圖書館 藏書의 主題別 構成比率 또는 價格이나 繼續性等을 考慮해서 選定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個人마다 主觀이 다르고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有能한 司書가 아니면 좀 어려운 方法이다.

다섯째 : 他機關과의 相互利用 可能性 檢討

이 方法은 아주 高價 雜誌의 境遇나 希貴雜誌 또는 잘 利用이 되지않는 雜誌로써 購入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 關聯機關과의 高度한 相互貸借 및 協力시스템 위에서만 活用될 수 있는 方法이다. 即 進步的 相互貸借 制度에 依한 政策的 雜誌購入 方法의 하나로써 소위 共同收書 政策의 一還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外國에서 가끔 採用되는 發展的 圖書選擇 方法이다.

여섯째 : 利用者의 要求에 依한 選定

이는 참으로 一線奉仕하는 定期刊行物室만이 購入依賴 받을 수 있는 選定方法이다.

2) 價格調查 및 書誌情報

外國 定期刊行物의 價格調查에는 그 正確性 때문에 許多한 問題點이 많다.

勿論 各種 카타로그에는 그 價格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完全히 밀기에는 現實的으로 곤란한 때가 있다.

왜냐하면 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外國雜誌에 依存하고 있는 境遇는 앞서 말한 價格이 나와 있는 目錄이 우리손에 들어오기 까지에는 적어도 6個月 以上이 걸릴 것이므로 요즘과 같이 價格變動이 甚할 때에는 價格이 적힌 目錄이 編輯된 후 引上된 것이 가끔 있다.

또 各 出版社로부터 特定雜誌에 對한 購讀要請書나 繼續購讀 要請書等의 印刷物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境遇도 많다. 이럴 때에는 實物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實物에는 다음해의 發行豫定이나 價格等의 그 雜誌에 關聯된 모든 情報가 記錄되어 있다.

例를 들어 刊種變更으로 因한 雜誌價의 폭등이 가끔 있는데 그러한 情報는 實物의 마지막 號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實物과 같이 生活하는 定期刊行物室에서 價格을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現在 定刊室에서는 카넥스를 使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雜誌에 對한 書誌的 情報를 알고 있기가 困難해서 効果的인 參考業務에 支障이 있다. 이를테면 購入인지 受贈인지 交換인지 出版社가 어디 인지 언제 創刊된 雜誌인지 等의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移轉後의 整理過程에 있는 過渡期라서 書架目錄조차 完全치 못해 아주 答辯이 窮塞한 때가 많다.

그러나 收書課의 담당자들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또한 職制上의 모순점의一面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척크業務의 二重性과 調査事項 調査

現體制下에서는 收書課와 定刊室에서 雜誌의 척크를 二重으로 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收書課에서는 購入雜誌의 境遇 檢受 할 責任이 있고 定刊室에서는 購入, 受贈, 交換 等 모두 引受하기 때문에 受書課에서 척킹카드를 따로 同一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 限 定刊室에서는 적어도 무엇을 引受했는가는 알아야 되겠고 特히 購入雜誌의 境遇 그 所在나 責任問題 가 따르기 때문에 따로 척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雜誌를 척크함으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한 雜誌가 들어오면 그 雜誌에 Errata가 있는가를 일일히 調査處理해야 되고 各種 變化事項(誌名變更, 刊種變更, 休刊, 廢刊, 復刊, 創刊案內, 價格情報等)에 對한 것을 調査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速報性을 生命으로 하는 雜誌를 長時間 가지고 있어서는 않되기 때문에 또한 척크業務의 二重으로 因한 時間과 人力을 節約하기 爲해서라도 制度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生覺한다.

4) 雜誌의 未着과 督促

外國雜誌의 境遇 Cargo system을 使用하지 않는 限 雜誌의 缺號發生은 不可避한 것 같다.

現行雜誌에 缺號가 생겼을 境遇 勿論 收書課에서 먼저 그것을 알고 督促한다. 그러나 利用者로 부터 直接的으로 督促받거나 質問을 받게 되는 곳은 定刊室이다. 勿論 收書課에서 督促은 하고 있지만 定刊室 立場으로써 收書課로 問議 兼 督促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結局 督促業務가 二重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定刊室에서 直接 業者한테 督促할 性質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問題가 되는 것이다.

또한 비록 定刊室에서 收書課에 督促은 하지 만 그 督促結果를 이를테면 어째서 缺號가 됐으

며 언제 들어오게 된다는 等의 内容을 기다리는 利用者에게 對答해 주어야 할 하등의 答辯資料가 없어 난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5) 製本問題

定刊室에서는 雜誌의 한 volume이 完全히 맞추어지면 收書課에 引繼, 製本을 依賴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곧 製本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利用은 不可能하며 또 缺號가 생길 경우 過年度의 雜誌를 缺號가 補充될 때까지 無限定 保管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定刊室의 立場이다.

雜誌의 速報性을 認識하고 單行本과 別置運用 한다면 적어도 製本所에 들어가기 直前까지는 利用이 可能토록 조치되어야 하는데도 그때 그때 製本이 않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또 製本이 되었다해도 登錄係에서 또는 整理課에서 끌게되는 期間 亦是 短지만은 않으니 問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volume이 完全히 맞추어져 合綴製本 할것이나 缺號가 있는채 假綴製本할 雜誌도 製本 直前까지는 利用시켜야 되기 때문에 製本待機室 兼 利用도 시킬수 있는 書架와 場所가 必要하다.

그러나 定刊室에는 雜誌書架의 構造가 그렇게 되어 있지않고 또 그러한 場所도 없다. 더구나 서울大學校 規定에는 製本業務가 收書課로 되어 있어서 volume이 다 채워지면 곧 收書課로 넘겨주어야 될으로 收書課에서는 製本 直前까지 利用이 可能토록 조치할 必要가 생기게 된다. 即間接奉仕하는 收書課가 利用까지 시켜주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雜誌製本은 收書課를 通하므로써 생기는 時間과 人力의 낭비를 피하고 利用上の 不便을 덜어 주기 爲해서라도 定刊室에서 管掌할 수 있도록 組織改編 等의 諸般조치가 必要하다.

以上이 대강 收書課와 관련된 業務의 큰 問

題이지만 그外의 작은 問題點도 적지않다.

그外에 整理課와도 定刊物이지만 單行本 取及할 必要가 있는 경우라던지 追記問題, 定刊物의 整理, 其他 館內業務의 統一性에 따른 問題들이 相關되어 있다. 特히 參考書誌課와는 雜誌를 매체로해서 利用者를 直接 對하는 定刊室에서는 基本的인 簡單한 參考業務에서 부터 複雜한 參考業務에 이르기까지 完全히 그 業務가 重複되어 있다.

왜냐하면 利用者가 定刊室에서 생긴 簡單한 알고 싶음(적어도 雜誌에 關한 限)이 있을 경우 여기는 定期室이니 參考室에 가서 물어야지 하고 그곳까지 가서 물고오는 利用者는 거의 없을 것이며 또한 定刊室에 勤務하는 司書도 그렇게 해서는 않되는 것이다.

學術雜誌 記事索引을 만들기 為해서는 定刊室의 雜誌를 利用해야하며 또 定刊室은 적어도 雜誌에 關한 限 総合目錄等 몇 가지의 參考資料는 備置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定刊室은 利用者를 直接 對하기 때문이다.

또한 參考書誌課 所屬으로 되어 있는 복사기의 境遇 定刊物室의 資料에 依한 複寫物도 적지 않은 데 不足한 職員으로써 複寫의 申請 및 被複寫物의 回收 때문에 얼마만큼 았다갔다 해야하는 것 또한 큰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收書課, 整理課 그리고 參考書誌課를 通해 어느課와도 뗄수 없는 깊은 關聯과 業務限界의 애매함이나 重複때문에 定期刊行物室의 課에로의 昇格과 獨立運用은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지 않는限 定刊物에 投資한 비중만큼 效果的인 定刊室運用은 期待하기 어려울것 같다.

12. 맷 음 말

앞서 累次 言及된바 있지만 亦是 定期刊行物

은 그의 特性과 機能上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位置가 날로 重要視 되어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것은 全 圖書購入費의 80%에 該當하는 莫大 한豫算을 外國學術雜誌 購入費에 充當하고 있는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境遇를 보아도 쉽게 그의 重要性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처럼 많은 比重을 두는 定期刊行物라면 그의 管理面에서도 그만큼 比重을 두어야 合理의 이지 않겠느냐 하는 懷疑를 느낀다.

現在 定期刊行物室은 그 所屬이 閱覽課로 되어 있으므로써 業務內容이나 機能上 他課 業務와 重複되거나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애매한 狀態라서 効果的인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許多한 問題點들을 内包하고 있다.

이러한 許多한 問題點들에 對한 最善의 解決策은 적어도 定期刊行物에 關한 限 選定에서부터 製本까지 全課程을 効果的이고 一貫性있게 運用 할수 있도록 定期刊行物室의 課에로의 昇格이라고 生覺한다. 筆者は 이에 對해 強力히 建議하는 바이다.

가끔 教授나 學生들로 부터 圖書館이 잘 되어야 大學도 잘되지, 圖書館은 大學의 심장, 基本의이고 中樞的인 教育支援 施設…하는式의 圖書館에 導한 期待와 重要性은 알고 있는듯 하다. 다른 機關이라면 모르지만 왜 그렇게들 예기하고 글을쓰는 教授나 學生들自身이 主人인 大學에서 까지도 大學圖書館의 現實은 期待한만큼 잘되어 있지 않은가?

大學의豫算이나 政策은 누가 짜는 것이며 또 問題點이 있다면 그것을 解決해줄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勿論 圖書館內의 實務的 內實도 重要하지만 그 것에 발맞추어 支援해 줄 必要는, 이끌어 줄 根本的 政策은 더 重要하지 않은가?

全大學의 綜合化에 따라 빛어진 圖書館의 할

일은 너무도 엄청나게 많고 느끼는 責任感도 무
겁기만 하다.

여러가지 어려운 處地에도 圖書館職員 相互間
의 獻身的 協力으로써 겨우 現狀維持는 하고 있
는듯 하지만 보다 根本的인 問題點의 解決없이
는(收書過程에서 必要한 法律條項의 改正이나,

組織改編等의 획기적인 政策的 支援) 効果的인
定刊物管理는 밝지만은 않은것 같다. 따라서 筆
者는 다시한번 大學教育政策 立案者들의 깊은 理
解와 보다 徹底한 協力を 期待하여 바라지 않는
바이다.